# IV. 보험회사의 활용전략

## 1. SWOT 분석

- □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등 선진형 제도8) 도입에 따른 DC형 퇴직연금의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요인 분석을 통한 자사의 역 량에 맞는 DC형 퇴직연금시장 확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  - 향후 복수사용자제도의 시행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시장확대 및 시장선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 금융권이 주 도하는 DC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선결과제임.
  -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자사의 경쟁력 요인 분석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,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,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.
- □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강점 및 약점,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<표 11>과 같음.

<sup>8)</sup> DC형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('09), 국제회계기준 도입('11),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(근퇴법 개정안, '10) 등

<표 11>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시 보험회사 SWOT 분석

강점(Strengths)	약점(Weaknesses)	
<ul> <li>맞춤형(기업보험) 및 표준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 및 운영 노하우</li> <li>기업복지서비스 제공 경험 및 위험관리 기관으로서 높은 이미지</li> <li>기업고객에 대한 아웃바운드 영업경험</li> </ul>	<ul> <li>은행보다 낮은 인지도</li> <li>자산운용 능력의 미흡 및 고수익 운용기관 으로서 이미지 취약</li> <li>전국적인 지점 및 네트워크 부족</li> <li>·은행은 회사 또는 건물 내 입점</li> <li>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능력 미약 및 전문인력 부족</li> </ul>	
기회요인(Opportunities)	위협요인(Threats)	
<ul> <li>기존고객(퇴직보험)에게 우선적으로 표준형 제도 전환유도 가능</li> <li>개정 근퇴법 시행 시 모집인에 의한 퇴직연금 취급 등 다양한 판매채널 활용가능</li> <li>대표사용자 계약의 경우 금융회사 컨소시움 방식의 보험회사 공동 참여 가능</li> </ul>	- DC형 퇴직연금에만 복수사용자제도 도입 - 국내외 DC형 퇴직연금 확대 추세 - 주거래 은행제도 관행 확대 -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소지 - 그룹사의 은행을 통한 대표사용자제도 도입 확대 가능성 - 기존 고객의 타 금융권으로 이탈 가능성 상존	

- □ 보험회사는 강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표준형과 맞춤형 보험 의 상품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대표사용자 및 표준형 제도의 상품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 -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의 퇴직보험 및 단체보험 등 기업성 보험의 판매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, 노후소득보장·장기자산운용·기업 복지서비스제공·리스크관리 등의 종합적 리스크관리기관으로서 기능 강화와 인식 제고 필요
  - 보험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표준형 상품을 조속히 개발하여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전환을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하며, 직급·대리점·금융기관대리점 등 다양

한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개발 및 다양한 판매채널 활용 필요

- □ 보험회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자산운용 능력의 부족, DC형 퇴직연금 전문인력의 부족, 낮은 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.
  - 보험회사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사의 DC 형 퇴직연금시장 선점 가능성, 타 금융권의 표준형 제도 취급을 통한 주거래 금융제도 영업 확대 및 기존고객 이탈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.

## 2. 대응전략

## 가. 시장진입 측면

## 1) 대표사용자 시장의 선점화

- □ 대표사용자제도는 기업이 한번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 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시장선점이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으 로 판단됨.
  - 대표사용자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가입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한번 인가받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사결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.
  - 특히, 대표사용자형 중 자본 및 인적관계가 있는 계열사들이 선 호하는 형태9의 경우 그룹사의 경영전략에 의해 도입된 퇴직연금

계약을 해지하거나 개별 회사가 탈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.

또한 협회, 조합, 단체 등이 대표사용자가 되는 형태10)의 경우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추진·계약한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도 상당한 절차가 소요됨.

<표 12> 복수사용자제도 형태별 가입 및 해지의 용이성 비교

구분	대표사용자형		ロス対
	연합형 형태	종합형 형태	표준형
가입	용이함	중간	용이함
해지	어려움	중간	용이함

- 따라서 대표사용자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업, 조합, 협회, 단체 등 수요자의 속성별 니즈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, 낮은 인지도 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후소득 및 위험관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특화된 제도설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화가 필요함.
  - 예컨대 단체상해보험 등을 부가할 수 있는 기업복지형 퇴직연 금제도를 개발하는 등 위험관리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<sup>9)</sup> 일본의 연합형과 같은 형태이다.

<sup>10)</sup> 일본의 종합형과 같은 형태이다.

## 2) 표준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

- □ 표준형 제도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 회사가 개발하여 모집하는 표준계약 제도로 중소기업의 고객 확 보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.
  - 표준형의 경우 단일사용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의 편의 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아 수수료와 가입절차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중소기업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.
  - 표준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보험 등 기업성보험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, 전문화된 영업조직 운영 경험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.
    - 조속히 표준형 시장에 대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근퇴법 시행 후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 - 표준형 제도가 근로자의 개별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산업별, 업종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표준형 제도를 개발하 는 차별화된 상품개발 전략이 시장주도의 핵심전략이 될 것임.
  - 특히, 금융회사가 주도로 모집하는 표준형 제도는 기업이 주도로 도입하는 대표사용자형과 사업모델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므로 사업모델별 시장확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.

#### 나. 마케팅조직의 강화

- □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<sup>11</sup>)될 경우 보험회사가 모집채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이 가능해지므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모 집조직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.
  - 보험회사는 자사의 법인영업조직은 물론 설계사·대리점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 소사업장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전략이 필요함.
    - 다수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시간비용 및 초기 마케팅 비용이 단일사용자제도보다 높을 것이므로 퇴직연금제도에 특성화된 모집설계사 조직을 양성하는 준비가 필요함.
  - 표준형 제도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와 제도의 공동개발 및 운 영·자산관리 등에 대한 업무제휴를 추진하여 지역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    -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 행하는 데에는 한계<sup>12</sup>)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 서 타 금융회사와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의 가능성이 높음.
    - 특히, 보험회사는 제도설계 및 컨설팅, 노후소득기관으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장점으로 지방은행 등과 퇴직연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  - 일본의 손보재팬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의 퇴직연금시장에 적극

<sup>11)</sup>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퇴법안은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규정(제31조 관련)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보험설계, 보험대리점, 투자권유대행인, 공인노무사 등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.

<sup>12)</sup> 퇴직연금사업은 운영관리업무(연금설계 및 컨설팅, 기록관리, 근로자 교육), 자산관리업무(계좌관리, 부담금 수령, 적립금 보관 및 관리, 운영지시, 급여지 급) 등에 상당한 인적 및 물적 비용부담이 소요되므로 중소형 금융회사가 모 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.

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업무제휴를 추진하여 지방은 행이 보험회사의 표준화된 퇴직연금 사업모델을 도입·취급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제휴방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.

## 다. 운용능력의 제고: 전문회사의 설립 검토

- □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에 대한 전문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에 특화 또는 전문화된 회사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  - 일본의 손보재팬은 타 금융권이 주도하는 DC형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C형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높은 시 장점유율<sup>13)</sup>을 기록하는 등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됨.
  - 전문회사의 설립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겠지만 자사의 규모와 역 량에 따라 단일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시장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   - 전문회사의 설립방식은 대형사의 경우 단독으로도 가능하며,
       중소형사의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.

## 라. 서비스의 차별화

□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 연금서비스의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번들형 서비스(Bundled Service) 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.

<sup>13)</sup> DC형 운영관리기관 200여개 중에서 10위의 실적을 거둠(2008년말).

- 번들형 서비스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서비스 를 단일화하여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단일화체계로 대형 금융회사에 적합한 구조임.
-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퇴직연금업무14)에 대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추거나,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회사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함.
- 특히,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 관리업무, 자산관리업무, 상품제공업무 등에 대해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단일한 금융회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성 향이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것임.

<sup>14)</sup> 제도설계 및 컨설팅, 연금계리, 기록관리, 운용상품의 선정 및 제시, 가입자 교육, 정보제공, 전문콜센터 등